



(:)
[2018. 3. 13.] [28696 , 2018. 3. 13.,]
() 02 - 6312 - 8312
() 044 - 215 - 7158

1 () 「 」

[2011. 10. 26.]

2 () 「 」 (" ") 2 1 .
「 」 3 .

[2011. 10. 26.]

3 () 5 (計上) 가가

1. 가가

2. 가 가

3. 가 가 가 가

[2011. 10. 26.]

4 () 9 1 1
2 (" ") 1 . , 2
. < 2016. 4. 28.>
, 가 , 가

[2011. 10. 26.]

5 () 10 (")
") 20 , 15 , 10 ,
20 , 15 , 10 ,
3 .

[2011. 10. 26.]

6 () 15 1 " "
. < 2014. 11. 28., 2016. 4. 28.>

1. 「 가 」 7 2 4 2

2. 「 가 」 38 「 」 37

3. 「 가 」 40

4. 3 가

[2011. 10. 26.]
[2016. 4. 28.]

6 2(가) 15 3
가 가 (" 가 ") .

.< 2016. 4. 28.>

- 1.
- 2.
3. 5 . 가 . 가
4. 가 가 가
- 가 가 가
- 1 2 가

[2011. 10. 26.]

6 3() (" ") .
.< 2017. 5. 8.>

- 1.
- 2.
- 3.
4. 26 2 (" ")
5. 2 , .

- 1.
2. 12

3 2 3 .

(解囑) .< 2016. 4. 28.>

- 1.
- 2.
3. ,
4. 1 5 .< 2016. 4. 28.>

[2015. 7. 24.]

7 () 16 .

- 1.
- 2.
- 3.

4. 가
5.
6.
1

1. 가
2.
3.
4.
5.
6.

7.
8.
9.
[2011. 10. 26.]

7 2 <2017. 5. 8.>

8 () 20 2
500
20 3
가 ,
2 가 ,

[2011. 10. 26.]

9 () 21 2 " "

1.
2. (가)

[2011. 10. 26.]

10 () 21 4

1.
2.
[2011. 10. 26.]

10 2() 25 3
5
25 3 4 「 」 25 ,

[2011. 10. 26.]

10 3() 26 2

30 1

[2011. 10. 26.]

[11 <2017. 5. 8.>]

10 4() 26 2 3 7 " "

- 1. ,
- 2. .

[2017. 5. 8.]

10 5() 26 3 1 6 가 8 "

" 4 . < 2018. 3. 13.>

26 3 2

1

가

.< 2018. 3. 13.>

[2017. 5. 8.]

10 6() 26 4 1

(「 」 2 1 「

」 25)

()

- 1. ") (")

- 2. 1

- 1.
- 2.
- 3.
- 4.

가 ,

26 4 1

[2017. 5. 8.]

10 7(5) 26 5 1 " "

- 1. .
- 2. 30
- 3. 31 2
- 4. 33
- 5. 33 2 가 가 .
- 6. 35
- 7. 36 2

[2017. 5. 8.]

10 8() 26 7 5 " " "

「 」 (") .

26 7 5

1 (" ") (預託) . ,

- 1.
- 2.
- 2

1. 「 」 163 1 「 가가 」 32 2

2. 「 」

3. 3

2

[2017. 5. 8.]

11 () 26 9 1 . < 2018. 3. 13.>

(" ")

- 1. .
- 2. 26 3 2 「 가 」 6
- 1 2

3. 26 3 2 26 8 1

4.

5.

10

1 5 3 ,

1 1 2

- 1.
- 2.
- 3.
- 4.

1 5 4

- 1. 26 2 3 26 3 1
- 2. 26 8 1
- 3. 26 9 2
- 4.
- 5.

, 1 1 4 25

7

1 9

[2017. 5. 8.]

[11 10 3 <2017. 5. 8.>]

11 2() 26 10 1 "

1 ,

가

. < 2017. 5. 8.>

1

4

26

10 1

, 26 10 1 5

1

. < 2017. 5. 8.>

26 10 1 6 "

"

. < 2017. 5.

8.>

- 1. 27 2
- 2.
- 3.

26 10 2

.< 2017. 5. 8.>

4

26 10 2

100 50

.< 2017. 5. 8.>

[2016. 4. 28.]

12 ()

27 1

가

2 (

3)

가

27 1

[2011. 10. 26.]

12 2() 27 2

27 2

"

"

3

가

「

」

5

가

「

」

3

(

"

"

)

27 2

가

가

[2016. 4. 28.]

12 3() 27 2 1

3

1

4

1

「

」

5

1

3

[2016. 4. 28.]

13 () 31 2 " 가 "

1.

1

2.

3.

4.

5.

가

31 3

2

[2011. 10. 26.]

13 2(

)

31 4

"

"

1.

2.

3.

4.

31 4

1.

2.

3.

4.

31 4

"

"

가

31 4

"

"

1.

2.

2

31 4

(

"

"

)

(

),

5

31 4

1.

2.

3.

[2011. 10. 26.]

13 3(

)

31 2 1

3

<

2017. 5. 8.>

1.

)

2.

3.

1 3

[2016. 4. 28.]

14 () 33 1

10

1. , (.)

.)

2.

3. 가

4.

[2016. 4. 28.]

14 2(가 가 .) 33 2 1

가 (" 가 ") 5 . < 2017. 5. 8.>

33 2 1 " . , . , (" ")

. , . ,

가 5

33 2 3 5 " 가 .

가

33 2 1 가 .

가

5 가 30

가 , 가

가 7

6 가 가 가

33 2 4 가

1. 1 : 100 2 . ,

1 100 1 .

2. 100 1 가 1 : 가 1
 1 8 가 가 .

[2016. 4. 28.]

15 () 35 1 " "

1. (從物)
2. , (浮標), (浮棧橋) (浮船渠)
- 3.
- 4.

35 1

35 2

35 4

.< 2016. 4. 28.>

35 4 2

3 가 가 가

가
가

.< 2016. 4. 28.>

[2011. 10. 26.]

16 () 35 3

1. 가 18 2 가
2. (耐用年數)
3. 가 , 2

[2011. 10. 26.]

17 ()

1. 16 1
2. 17 1
3. 21 1 30 1 . 2
4. 27 1
5. 28
6. 31
7. 36

[2011. 10. 26.]

17 2() 36 2 1 " "

1. ()

2.

3. 가

4. 36 2 2 (" ")

1 1 . ,
가 1

36 2 1

1 36 2 3 " 가

1. 가

2. 가 「 」 27

3.

[[2016. 4. 28.](#)]

17 3() 1 9

()

1. 3

2. 가 5

3 2 3

6 3 5 " " "

1 6

[[2016. 4. 28.](#)]

18 () 39 2 1

31 1 . < [2016. 4. 28.](#)>

1 60

, 30 , 2 . < [2016. 4. 28.](#)>

39 2 1 , 2

1 3

[2011. 10. 26.]

19 () (가 「 19)
가 < 2017. 5. 8.>

1.
2. 31
3. 31 2
4. 33
5. 33 2 가 가 .
6. 33 3
7. 35
8. 36 2
9. 39 2

[2016. 4. 28.]

< 28696 ,2018. 3. 13.>

[별표 1] <개정 2017. 5. 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 소하천 정비	50	
6. 농어업기반 정비	80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나. 개별시설	2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액비화(液肥化) 시설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50	
다. 시지역(읍 이상)	50	

라. 군지역(빈 이하)	7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8. 경전철 건설	정액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1. 대중교통 지원	9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44. 지방하천 정비	5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60	
나. 큰나무	50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0. 청소년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 ~ 88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따라 차등 지원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	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p>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p>	<p>서울: 50 지방: 80</p>	<p>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p>
<p>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p>	<p>서울: 50 지방: 80</p>	<p>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p>
<p>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p>	<p>서울: 50 지방: 80</p>	<p>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p>
<p>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p>	<p>서울: 50 지방: 80</p>	<p></p>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기초자치단체는 10%p 이하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성장촉진지역: 80 사업비의 3분의2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6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은 70	가. 개량(교체·보수)의 경우 광역시는 20%, 도청 소재지는 30%, 시·군은 5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16. 8.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	사이버 가정학습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填)
18.	지역정보화 지원
19.	자전거도로 정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21.	공공도서관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23.	문화의 집 조성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26.	관리책임자대회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9.	조각공원 조성
30.	통영국제음악제
31.	문화학교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35. 노량해전 재현
36. 문화의 거리 조성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41. 공주미술제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6. 농가도우미 지원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51. 시·도 수리개 수리시설 관리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3. 삭제 <2015.7.24.>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56. 공공보건사업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58. 지역봉사사업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청각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5. 장애인생활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유아거주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81. 경로당 운영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양로시설은 제외한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삭제 <2015.7.24.>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 급식

101. 삭제 <2015.7.24.>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33. 벽지노선(僻地路線) 손실보상
134. 오지(奧地)·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137. 자영수산물 급식비 지원
138. 장보고축제
139.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142. 연어 치어(稚漁) 방류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48. 국제수산물산업전(부산광역시)
149. 양식기반시설
150. 마을어장 개발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57. 친환경 화장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162. 임산물 유통·가공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times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별표 4] <개정 2018. 3. 1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 제1항제6 호가목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6조의3 제1항제8 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1.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별표 5] <개정 2017. 5.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간접보조사 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보조금수령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